

제314회 임시회  
환경수자원위원회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 
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
제 안 설 명

(의안번호 제00116호)



2022. 9.

서울특별시의회  
남궁역의원(국민의힘, 동대문3)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남궁역 부위원장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43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은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, 생태·경관보전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복원 근거가 미흡하므로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자연생태계’를 「자연환경보전법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‘자연환경’으로 변경하며,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원계획 수립 근거 및 세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구성은

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원칙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,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, 생태·경관보전 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15조),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~제18조),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~제23조), 자연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24조~제27조),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(안 제28조~제32조)으로 되어 있습니다.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